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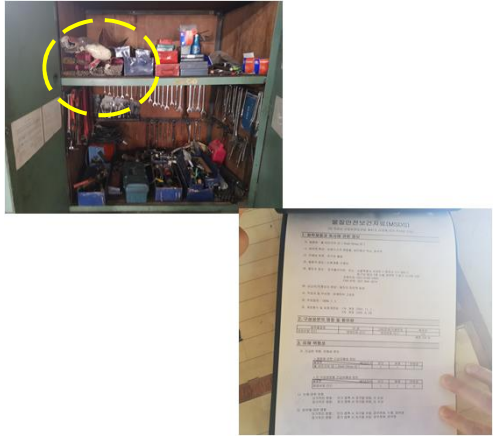


개선 대책
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동 1층에 보관하고 있는 체인블럭에 훅해지장치이탈 및 손상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시 고정미흡, 낙하로 인한 협착 등 위험 상존</p>




예방대책	
<p>5. 훅의 입구(hook mouth)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#76b82a;">최초보다 10%이상 변형시 폐기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	
조치사항	<p>체인블럭 훅해지장치가 없는 제품은 사용금지 및 재설치 후 사용토록 하시어 자재낙하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]</p>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동 내 사용하는 용접봉 등 유해물질 주변 MSDS미게시, 구버전 MSDS 비치로 근로자들의 올바른 정보습득 미흡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 위험 상존</p>



예방대책	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	
조치사항	<p>용접봉 등 유해물질의 저장, 취급 등 장소 주변에 올바른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등 조치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]</p>

개선 대책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동 펌프 구동부 등 확인을 위한 계단 측면 및 작업발판에 난간 미설치로 근로자들의 부주의 등의 의한 추락 등 위험 상존</p>




예방대책	
문제점	
조치사항	<p>높이 1M이상 계단에는 측면 안전난간 설치,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주변에도 난간설치 등 조치로 작업자들의 추락 등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]</p>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동 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(유류가 묻은 천, 유해물질 등)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화재발생 등 우려</p>



예방대책	
문제점	
조치사항	<p>유류가 묻은 천 등은 뚜껑이 달린 불연성 구조의 용기에 보관하는 등 조치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, 238조]</p>

개선 대책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장 지브크레인(C-07)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콘센트 고정상태 미흡, 접지연결상태 미흡으로 근로자들의 관리소홀, 미확인 접촉 등에 의한 감전 등 위험 상존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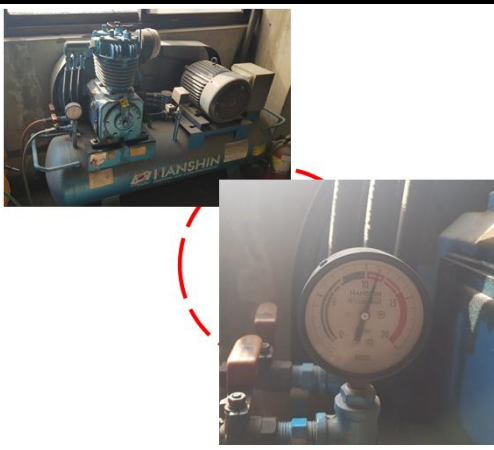
예방대책	
	
조치사항	<p>일부 고정이 미흡한 콘센트는 고정 및 접지선을 연결 후 사용토록 하시어 누전, 감전 등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, 302조]</p>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장 펌프 회전부에 방호덮개 미설치로 근로자들의 미확인 접촉 등에 기인된 협착 등 위험 상존</p>




예방대책	
<p>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폴리·플라이휠·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	
조치사항	<p>기계의 회전축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덮개 등 설치 후 관리토록 하시어 접촉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,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]</p>

개선 대책
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동 내 보관, 사용하는 일부 공기 압축기의 설계압력보다 많은 압력이 발생하여 작은 충격 등으로 인한 폭발 등 위험 상존 [안전밸브 설치상태는 적정]</p>



예방대책	
<p>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	
조치사항	<p>공기압축기는 매일 안전밸브 이상여부, 드레인밸브를 활용한 응축수 제거 등 조치로 폭발 등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, 동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]</p>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아세틸렌-산소 용접기 관리상태 미흡으로 용기 전도, 부식 등에 의한 폭발 등 위험 상존</p>



예방대책	
<p>3.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</p> 	
조치사항	<p>지하층에 보관중인 아세틸렌-산소 용접기는 벨트 또는 체인을 활용한 고정 및 위험물 저장소 등 지정장소 보관으로 폭발 등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]</p>

개선 대책

유해·위험요인	
문제점	
유해위험요인	<p>3유입동 내 설치, 사용하는 컨베이어의 안전검사 미실시로 안전성 미확보 사용으로 인한 위험 상존</p>



예방대책	
<p>제28조의6(안전검사 대상 유해·위험기계등) 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6. 2. 17., 2016. 10. 27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프레스 2. 전단기 3. 크레인(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) 4. 리프트 5. 압력용기 6. 곤돌라 7.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은 제외한다) 8.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한다) 9. 화확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.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. 롤러기(말뭉개형 구조는 제외한다) 12. 사출성형기[형 체결력(型締結力) 294킬로뉴턴(kN) 미만은 제외한다] 13. 고소작업대[「자동차관리법」 제3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원동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(高所作業臺)로 한정한다] 14. 컨베이어 15. 산업용 로봇 	
조치사항	<p>안전검사 대상기계(컨베이어)는 안전검사 주기에 따른 검사 실시 및 관리로 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안전검사 대상 유해, 위험 기계 등]</p>